



의약품·의료기기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공급내역보고는 기본, 지출보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!



지출보고서 제도란?

제약·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제도입니다.

법령상 허용되는
경제적 이익

- 1 건본품 제공
- 2 학술대회 지원
- 3 임상시험 지원
- 4 제품설명회
- 5 시판 후 조사
- 6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
- 7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(의료기기만 해당)

지출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?

제출기간 2026년 6~7월, 매년 실시

제출내용 2025년도에 의료인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

★ 경제적 이익등 제공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제출 필수

제출대상 의약품·의료기기 제조·수입·도매/판매(임대) 및 판촉영업자(CSO)

★ 의약품·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업체는 모두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

제출경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「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(KOPS)」



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통해 실시되었습니다.



보건복지부



건강보험심사평가원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